

한·미 약사면허 상호인정 3년내 초안 전망

◀44면에서 계속▶

▲한미FTA와 약사면허

보건분야와 관련된 한미FTA의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의약품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약국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약사면허를 비롯한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에 있어서는 향후 협의체들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약사회는 국내 약사인력의 경우 양성수준 및 배출인력의 지속적인 수준 향상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되므로 한미양국간 약사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중 약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7종에 대하여 전문직 자격을 인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한의학 분야 자격을 상호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침구사와 국내 한의사의 자격 상호 인정 문제는 학제, 교육시간, 자격요건 및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인정 대상 직종과 구체적인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약사면허 개방 추이

한미자유무역 협정문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내용에 의하면 전문직 자격 인정 대상 직종과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 개발, 절차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하여 1년 이내에 회합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를 포함하여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문제는 늦어도 3년 이내에 대상 직종과 인정 기준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약사 면허의 경우 미국이 2000년부터 약대 교육년한을 6년제로 변경하고 2003년부터 타국의 4년제를 전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약사면허에 대한 인정 논의는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양국의 6년제 이전 졸업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및 실무수습기간 이수 등 상호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약대6년제 졸업생 배출 이전까지 약사면허가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FTA가 체결된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이외에도 현재 일본, 캐나다, EU 등과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대한약사회는 캐나다에 대해서 약대 6년제시 교육년한이 동등할 것을 전제로 약사 면허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회원국들의 약대 학제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EU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협상을 진행할 경우 약사면허 상호 인정을 요구하지 않되 개별 회원국으로 분리할 경우 국가별로 상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2007년말을 기준으로 이미 약사면허 배출자는 5만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자의 증가로 제약, 병원 등의 약사 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신규 약사들이 1200명 내외로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약사 인력도 오래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중장기 인력 수급에 대한 약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한 국내 유류 전문인력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FTA 체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바야흐로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방시대의
약국

- 한미FTA를 중심으로 -

“ EU·캐나다 등
국가별로

상호 인정 여부 판단
기로 ”



중랑구약사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286-42
☎ 02) 495-3568 FAX 02) 436-7822

40th
축·약사공론 창간40주년

회 장	이 병 준
부 회 장	김 선 자
부 회 장	김 동 식
부 회 장	정 희 선
부 회 장	김 혜 경
총무위원장	이 황 주
약국위원장	김 위 학
약학위원장	방 양 선

여약사위원장	김 혜 경
윤리위원장	김 용 해
정보통신위원장	이 향
청년약사활동본부장	전 성 국
의 장	박 상 롱
부 의 장	전 정 자
감 사	정 덕 기
감 사	이 준 령
	외 회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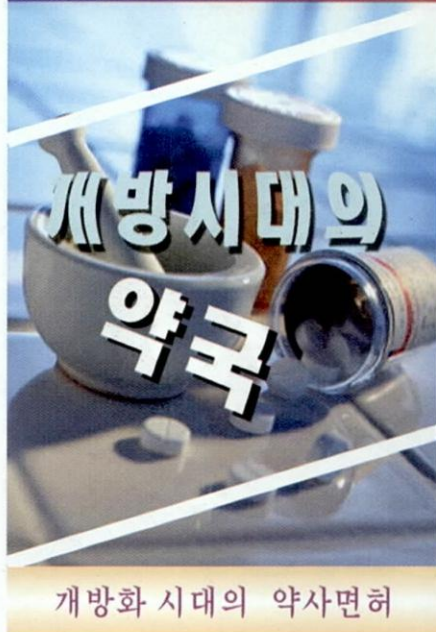
성북구약사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123-5
☎ 02) 914-8465 FAX 02) 941-7562

40th
축·약사공론 창간40주년

회 장	정 남 일
부 회 장	조 병 훈
부 회 장	김 은 배
부 회 장	오 천 권
부 회 장	문 경 철
부 회 장	신 연 수
부 회 장	김 남 빈
부 회 장	최 명 숙
총무위원장	김 선 환

약학위원장	하 태 수
약국위원장	정 현 수
윤리위원장	장 은 옥
여약사위원장	박 선 관
한약위원장	이 미 선
의약분업위원장	김 동 업
감 사	유 종 관
감 사	단 온 화
의 장	김 태 원
	외 회원일동



국내 약사인력 포화...해외 진출 절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교역과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2년 10월 남미에 있는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까지 그 범위를 넓혀 왔으며 2007년 6월 30일에는 미국과의 FTA에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비록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한-미 쇄고기 협상에 대한 반발 기류로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보건분야의 협상 결과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미FTA 보건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약사면허의 개방 추이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

▲한미FTA 보건분야 협상결과

1)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사항

미국은 단일 보험자인 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신약에 대해 선진 7개국 약가 수준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대한 최저가를 보장할 경우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관철시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격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약물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 연기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 의약품은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2) 제도의 투명성 관련 사항

미국은 건강보험 약가의 결정 및 등재 과정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 기회를 요구했다.

우리는 행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 동의하였으나 원심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또 자국 및 해외에서 제약사의 윤리

적 영업 관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제조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TV 등 전문의약품 광고와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은 수용하지 않았다.

3)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미국은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인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이미 특허법에 반영되어 있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품목허가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타인이 원용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5년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를 6년간 이미 보호해 주고 있어 받아들였다.

미국은 국가적 긴급 사태 등 위급 상황에서 특허의약품 사용하는 강제실시권 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45면으로 계속〉



광진구약사회

서울특별시 구의동 593-19 우림빌딩4층
☎ 02) 2201-6217~8 FAX 02) 2201-6219



회장	차현상	성배환
부회장	손호정	정숙훈
부회장	김운은	김경현
부회장	김강양	양선희
총무위원장		
약국위원장		
약학위원장		

윤라근무약사위원장	김종순
여약사위원장	조영희
한약·건강기능식품위원장	한은경
홍보위원장	김진숙
감사	이희권
감사	조성오
의장	황기태
부의장	박미자
부의장	안춘운

외 회원일동

동대문구약사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112-79
☎ 02) 927-6136~8 FAX 02) 926-9639



회장	김경오
총무담당부회장	조복덕
약국담당부회장	왕흥덕
한약담당부회장	유기호
여약사담당부회장	김선희
약학담당부회장	이진우
총무·여약사위원장	전경숙
약국경영위원장	김종울
약학위원장	권청진

한약위원장	박은원
윤리위원장	지제훈
자문위원	송용식
자문위원	김형근
감사	이창조
감사	심민자
총회의장	박호현
부의장	용영일
부의장	이경자

외 회원일동